

영어교육원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17.11.2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영어교육원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영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교육원은 ‘항공우주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대학의 미션을 구현하고 글로벌 소통·전문탐구 역량을 지닌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영어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영어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2. 대학영어교육과정 개발·운영
3. 대학영어교육과정의 운영 및 학사관리
4. 영어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운영
5. 전공영어 강좌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영어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3조 (원장) ①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의 운영을 총괄 한다.

②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조직) ① 교육원에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 행정실은 예산운영, 학사관리, 서무 및 그 밖의 행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5조 (영어교육운영위원회) ① 교육원에는 영어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어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영어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③ 교무처장, 영어교육원장, 인문자연학부장, 기초교양교육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11.2>

④ 영어교육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영어교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교과 및 비교과 대학영어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사항

2. 교육원 운영에 대한 사항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타) 그 밖에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 또는 내규·지침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